



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735호 2023년 05월 04일(목)

조 례

-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 6
-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3
-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규 칙

-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18

입 법 예 고

-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23

공 고

-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보상계획 공고 ----- 34

| | | | | | | | | | |
|---|--|--|--|--|--|--|--|--|--|
| 회 | | | | | | | | | |
| 람 | | | | | | | | | |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79호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을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확인증 발급

- 2.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 3.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 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 6.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 7.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행사 등)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고향사랑기부확인증

제 20 - 호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20

증평균수

직인

(앞)

이 증은 증평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뒤)

(재질: 플라스틱 / 규격: 8.6cm × 5.4cm)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80호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
은 항 제5호 중 “재난으로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81호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증평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돌봄에 필요한 재원 조달

- 3. 아동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4. 아동돌봄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아동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조정 및 기관·단체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4. 아동돌봄 우수사례 발굴
-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행복돌봄과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아동돌봄 업무 공무원

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다. 아동돌봄시설 이용 보호자

라. 아동돌봄시설 관계자

마. 그 밖에 아동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직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회 위원장은 협의회회를 대표하고, 협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정한다.

제10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아동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2. 아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3. 아동급식 또는 간식(이하 “급식등”이라 한다) 지원 사업
4. 아동 교육,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5. 아동돌봄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6. 아동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지역 간 연계 사업
7. 아동돌봄 인력양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동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보호자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돌봄시설 이용 대상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아동돌봄시설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구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4.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

③ 아동돌봄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현장 체험, 재료비 등 프로그램 참여나 이용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

공자의 아동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또는 장애인인 아동

⑤ 군수는 아동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돌봄시설의 연계 운영) ① 군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아동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아동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아동돌봄 관련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돌봄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아동급식·간식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아동에게 급식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 각 호의 아동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3. 다자녀 가구의 아동
4. 맞벌이 가정의 아동

② 군수는 급식등 지원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식등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14조(보험) 군수는 아동돌봄시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82호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마련, 대기 순번호 발급 및 관련 내용 게시

-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 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 5.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 7. 그 밖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83호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1084호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군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5.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규칙 제436호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 구 분 | 포인트 부여 대상 | 포인트 부여기준 (점) | 비고 | |
|--|--|--------------------|-------|--|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 행사참여 | 3,000 | 연 2회 | |
| | · 공모전·경진(연)대회 참가 | 5,000 | 연 2회 | |
| | · 예산편성과정 | 참여 및 의견제출 | 5,000 | |
| | | 제출된 의견 최종예산 반영시 | 5,000 | |
| | · 군민제안 | 의견제출 | 5,000 | |
| | | 제출의견 채택시 | 5,000 | |
| | · 입법예고·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5,000 | | |
| | · 각종 유해·불편 신고 등 공익신고 ※ 동일 신고건은 최초 신고자에게 1회만 인정 | 3,000 | | |
| | · 설문조사 참여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3,000 | 연 4회 | |
| | · 그 밖의 군정에 참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한정함) ※ 자체 운영계획에 따름 | 3,000 | | |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지 급 기 준 | 지 급 방 법 |
|--|---------------------|
| 5,000포인트 이상 누적시 1,000포인트 단위로 인센티브로 지급 (1포인트 = 1원) 예)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등 |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지급 |

증평군 공고 제2023-458호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증평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협약체결, 융자계획 등 공고(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차보전금 지원(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지원 제외(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신청 절차, 지원 결정(안 제8조 및 제9조)

바.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수(경제기업과,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2023년 5월 4일 ~ 2023. 5. 24일까지(20일간)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경제기업과(전화: 835-4043, 팩스 : 835-40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증평군 조례 제 호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협약체결) 군수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조건, 대출 절차,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계획 등 공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관한 협약내용,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이내
2. 지원 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

제6조(지원 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 등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2.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상환 중일 것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중소기업
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
3.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이 없는 중소기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대표자 또

는 위임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출 상담 확인서
2.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지원 신청 중소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중소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공장등록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되, 이전 분기 이차보전금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지원을 계속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 변제 약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연체 금액·기간
2. 중소기업의 경영·재무 상황, 담보 능력
3. 금융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4. 휴업 또는 폐업

5.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 | | | | | | | |
|-------------|------|--------------|-----|-------|-----------------------|-----|--|
| 업 체 명 | | | | 전화번호 | | | |
| 대 표 자 | | | | 팩스번호 | | | |
| 본사 소재지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주생산품 | | | | 설립일자 | | | |
| 자산현황 | 자 본 | 백만원 | | 매출액 | 내 수 | 백만원 | |
| | 부 채 | 백만원 | | | 수 출 | 백만원 | |
| 기업형태 | 법인여부 | 법인(), 개인() | | 입지형태 | 산업단지 () | | |
|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 | |
| 종업원수 (명) | 합 계 | 사무직 | 생산직 | 기업유형 | 여성기업 () | | |
| | | | |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 | | |
| 융자신청액 | | 백만원 | | 대출 은행 | | 은행 | |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 | | |
|------------------|---|---|
| 구 비 서 류 |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1. 대출 상담 확인서 1부 2.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확인서

귀하

| | | | | |
|-------------|-------------|--|--------|--|
| 신 청 자 | 업체명 | | 대표자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팩스 | |
| 현 황 | 사업자 등록번호 | | E-mai; | |
| | 법인등록번호 | | 업 종 | |

| | | |
|-------|-----|-----|
| 확인 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경제기업과 | | |

위 중소기업이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본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중지, 제한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증평군 공고 제2023-462호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보 상 계 획 공 고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증 평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5. ~ 2025. 12.(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스마트생산시설 및 기반조성 1식
-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2. 편입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3.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

입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 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 구비서류 제출, 등기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감정평가업자 추천

- 충청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충청북도지사와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3. 5. 04. ~ 2023. 5. 18.(14일이상)
- 열람장소 : 증평군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043-835-3712)
-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이내에 증평군 농업유통과에 서면 제출 (붙임1)

6. 기타사항

-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함.

-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 시기에 맞추어 상세 안내문을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043-835-3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 조서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
| 1 | 도안면 노암리 | 11 | 답 | 4,388 | 4,388 | 주병일 | 증평군 도안면 뇌실1길 34-1 | | | | |
| 2 | 도안면 노암리 | 10 | 답 | 3,245 | 3,245 | 김용두 | 증평군 도안면 입장길 161-24 | | | | |
| 3 | 도안면 노암리 | 58 | 답 | 1508 | 1508 | 이택희 |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8-16 우성빌라 102호 | | | | |
| 4 | 도안면 노암리 | 57 | 답 | 2,114 | 2,114 | 김덕수 | 대전 동구 계족로417번길 33, 401호 | | | | |
| 5 | 도안면 노암리 | 54 | 답 | 3,604 | 3,604 | 연도흠 | 제천시 청천동 485-30 | | | | |
| 6 | 도안면 노암리 | 53 | 답 | 3,070 | 3,070 | 연규영 | 증평군 도안면 백암1길 21-12 | | | | |
| 7 | 도안면 노암리 | 15 | 답 | 3,878 | 3,878 | 김태환 |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9-124 | | | | |
| 8 | 도안면 노암리 | 16 | 답 | 873 | 873 | 한춘태 | 증평군 도안면 뇌실1길 34 | | | | |
| 9 | 도안면 노암리 | 17 | 답 | 2,011 | 2,011 | 권혁복 | 증평군 도안면 뇌실길 99-14 | | | | |
| 10 | 도안면 노암리 | 22 | 답 | 3,664 | 3,664 | 한준태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14 | | | | |
| 11 | 도안면 노암리 | 21 | 답 | 2241 | 2241 | 한준태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14 | | | | |
| 12 | 도안면 노암리 | 20 | 답 | 1,702 | 1,702 | 최영순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522 | | | | |
| 13 | 도안면 노암리 | 19 | 답 | 2,947 | 2,947 | 서정동 | 청주 상당구 산성로16번길 12-7 | | | | |
| 14 | 도안면 노암리 | 18 | 답 | 1,870 | 1,870 | 노암마을회 | | | | | |
| 15 | 도안면 노암리 | 863 | 구거 | 5,720 | 863 | 농림수산부 | | | | | |